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 설치의무 추가 등 》

■ 송석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043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송석준의원 대표발의(제2211043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 설치의무 추가 (안 제19조의2)	2
나. 도시공원의 순찰 의무 추가 (안 제22조)	5
다. 어린이공원 내 음주·흡연을 금지행위로 추가 (안 제49조제4항 신설 및 제56조제2항)	8

I. 송석준의원 대표발의(제2211043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송석준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5. 6. 24.

다. 회 부 일 : 2025. 6. 2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공원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및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다 효과적인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조명시설의 설치와 순찰, 점검 등 추가적인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어린이공원의 설치 목적이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있음에도, 어린이의 건강과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주 및 흡연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공원관리청으로 하여금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순찰, 점검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며, 어린이공원에서 음주·흡연을 금지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건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제49조제4항 신설, 제56조제2항).

3. 검토의견

가.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 설치의무 추가
(안 제19조의2)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관리)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u>폐쇄회로 텔레비전</u> 과 <u>비상벨</u> 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관리) ----- ----- ----- ----- ----- ----- ----- -----폐쇄회로 텔레비전, <u>비상벨 및 조명시설</u> 등----- -----.

개정안은 도시공원¹⁾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함)가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위구역(이하 “도시자연공위구역”이라 한다)

현행법 제19조의2²⁾는 공원관리청이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시설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함)과 비상벨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명시설을 함께 설치할 경우 야간에도 시야 확보 등이 용이해짐에 따라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법 시행령 제15조의2³⁾에 따라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CCTV와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 매년 주민과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반영해야 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조명시설을 포함할 경우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조명시설 설치 구역 등을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한편, 현행법 제19조제7항⁴⁾은 도시공원의 설치기준, 관리기준 및 안전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⁵⁾은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에서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도시공원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관리)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관리)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법 제19조의2에 따라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주민과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① 도시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관리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기준, 관리기준 및 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내·외부에서 이용자의 시야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공원의 설치·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훈령)6)은 조명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여 주요활동구역 등에는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쉽게 보이도록 하고, CCTV를 설치할 때는 야간활용을 위해 조명도 함께 설치하도록 하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설치의 세부기준은 관련 지침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해당 지침에 따라 CCTV의 야간활용을 위해 필요한 위치에는 조명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현행 규정을 통해 조명시설의 설치와 사고 예방이 가능하여 법령개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도시공원의 안전기준) ②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에서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을 계획·조성·관리하여야 한다.

1. 도시공원의 내·외부에서 이용자의 시야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할 것

6)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4절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공원의 계획·조성·유지관리 기준

3-4-2. 도시공원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계획·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1) 조명은 도시공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배치를 하되 적절한 조도를 유지하여 안전감을 높여야 한다.

(가) 산책로 주변에는 유도등이나 보행등을 설치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감소시켜야 한다.

(나) 수목이나 공원시설물 등에 의하여 조명시설이 가리지 않도록 배치하고 관리되어야 한다.

(다) 공원입구, 통로, 주차장, 표지판, 주요활동구역에는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쉽게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라) 조명시설은 설치위치를 고려하여 파손 예방 디자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은 공원의 입구 및 어린이 놀이시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을 말한다.) 등 감시의 기능이 필요한 위치와 공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키는 위치에 설치하고, 야간활용을 위하여 조명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도시공원의 순찰 의무 추가(안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22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 조치)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u>그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신 설></u>	제22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 조치) ① ----- ----- ----- 도 시공원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예방 및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u>순찰, 점검 등 안전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안전관리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도시공원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 예방 및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순찰과 점검을 포함한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안전관리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22조⁷⁾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순찰 업무를 추가하여 공원 내에서 지속적인 순찰과 점검이 함께 이루어질 경우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편, 현행법 제19조제7항8)은 도시공원의 안전기준을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9)은 도시공원의 안전기준으로서 공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안전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원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점검뿐 아니라 도시공원 이용객의 안전과 사고 예방까지 함께 확보하기 위하여 순찰 등의 안전관리 조치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보다 포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됨.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공원의 순찰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경우 공원관리청이 순찰을 위한 인력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예산부담이 가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① 도시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관리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기준, 관리기준 및 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도시공원의 안전기준) ①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공원시설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어야 한다.

1. 설치안전기준

- 가. 주변의 토지이용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공원부지의 안과 밖에서 도시공원부지를 사용하는 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원시설을 배치할 것
- 나. 유희시설은 한국산업규격(KS) 인증 등 국내외 공인기관의 인증을 획득한 시설이어야 하고, 이용 동선·유희시설의 운동방향 등을 고려하여 행동공간·추락공간 및 여유공간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할 것

2. 관리안전기준

- 가. 공원시설 그 자체의 성능 확보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즐거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획·유지관리 및 이용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도록 할 것
- 나. 유희시설은 시설 특성에 따라 초기점검·일상점검·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의 형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유희시설의 사용제한·보수 등의 응급조치뿐만 아니라 수리·개량·철거·갱신 등의 항구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 다. 유희시설의 이용 사고를 막기 위하여 유희시설의 이용 실태를 근거로 마련된 안전확보 대책, 공원관리청 등과 공원이용자간의 역할 분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교육 또는 이용안내 등을 실시할 것

중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도시공원의 안전기준은 현행 법 제19조와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순찰 업무를 추가하더라도 시행규칙에서 다루는 것이 법체계상 적합하다는 의견임.

다. 어린이공원 내 음주·흡연을 금지행위로 추가

(안 제49조제4항 신설 및 제5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 ③ (생략) <u><신설></u>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누구든지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에서 음주 또는 흡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56조(과태료) ① (생략) ② <u>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③ (생략)	제5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u> ----- ---. 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49조¹⁰⁾는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또는 나무를 훼손하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일부 금지행위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4.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5.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농산물의 가공·유통·판매 등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2.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에 대해서는 제56조제2항¹¹⁾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¹²⁾에서는 음주 또는 흡연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어린이가 자주 방문하여 이용하는 공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 또는 흡연에 대한 노출을 예방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1항 및 제9조제7항에 따르면¹³⁾, 지방자치단체는 음주 및 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를 통해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 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나.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13)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어린이공원을 포함한 각종 도시공원을 금주구역 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¹⁴⁾, 법 체계적인 통일성 측면에서 「국민건강증진법」을 기반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주·금연구역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중복규제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법에서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고, 어린이공원에 한정하여 금지행위를 신설할 경우 타 도시공원¹⁵⁾에서의 음주 또는 흡연이 가

14) 2025년 8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금주구역 등을 정하고 있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는 총 146건이고, 금연구역 등을 정하고 있는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는 총 110건임(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 명칭 등에 일부 차이가 있음). 그 중 서울특별시를 예시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조례를 통해 도시공원을 금주구역(음주청정지역)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음주청정지역"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 놀이터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을 지정·운영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 놀이터

15) 【공원녹지법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구분】

구분	세분	내용
국가도시공원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제출기관	제출의견
서울시	○ 안 제22조 - 도시공원의 안전조치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정 ○ 안 제49조 및 제56조 - 어린이공원 내 음주·흡연행위에 관한 규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기시행 중으로 현행유지 필요
청주시	○ 안 제49조 및 제56조 - 음주·흡연 관련 금지행위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중복 - 금지행위를 어린이공원으로 특정할 경우 다른 도시공원에서는 음주·흡연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 가능하므로 신중검토 필요

구분	세분	내용
생활권공원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주제공원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방재공원	지진 등 재난발생 시 도시민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
	기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문 의 처
02)6788-5581